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1호 B.E. 2547 (2004)[1)]

태국헌법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48조 및 제50조에 의해 허가하는 한,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법(Food Act) B.E. 2522 (1979)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공중보건부령(ministerial regulation, 이하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아래 내용을 식품법B.E. 2522(1979)에 따른 보건부령 제2호의 4/1항으로 추가한다.

"4/1항. 식품의약품청이 위험하거나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을 판매 유통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4항을 준수 할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의 소관 정부기관 또는 동정부기관이 인정한 민간기관이 그 식품이 모든 표준을 충족한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은 확인서를 원산지 국가가 수입허가취득자(licensee)에게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식약청이 정한 국내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할 식품의 품질 보증서를 사용하여 수입할 모든 식품이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히도록 한다."

B.E.2547(2004)년 3월 19일 제정
쑤다랏 께유라판
공중보건부 장관

---

1) 관보 제121권/제33편/13쪽: B.E.2547(2005) 5월 25일
(Royal Gazette Volume 121/Part 33 A/Page 13/25 MayB.E.2547(2005))

주석: 현재 일부 유형의 식품들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소비에 부적합한 식품의 유입을 통제하여 그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 것은 국제관행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청”이 발표한 유해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 국가의 소관정부기관 또는 동정부기관이 인정한 민간기관이 당해 식품이 표준을 충족한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건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프롬낫(Phromnat)
2019년 2월 20일 수정